

電氣料金制度 合理化를 위한 改善方案과 새로운 政策方向

The Plan for an Improvement and New Policy in
the Rationalization of Electric Rates System

辛 廷 植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序 文

電力產業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에
너지 利用의 電力化率 增加에 따라 계속 增大하
는 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전력부문 투자의 效
率性提高 및 電力產業構造의 合理化는 당면한
주요 電力政策課題로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
라 전력정책의 基本方向은 適正電力供給 水準의
유지라는 公급위주의 차원을 넘어서서 경제성 기
준으로 그 焦點이 옮겨지게 되었으며, 새로운 전
력정책 과제의 해결은 공히 電氣價格制度의 变
화를 동반하는 전력산업의 構造的改革을 요구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電氣料金制度의 特징은 역사적으
로 각종 政策의 要因이 복합적으로 反映되어면서 형
성되어 왔다는 점에 있으며, 그 결과 資源의 效
率의 配分, 料金負擔의 衡平性, 料金水準의 安定
性 등 價格決定의 一般的原理에 비추어 볼 때
여러 문제점들이 露呈되고 있다.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電氣料金 構造의 주요
변동추이 및 현행요금 구조상의 문제점을 분석
한 뒤 電氣事業의 새로운 與件에 부합하는 料金
制度改善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2. 電氣料金構造의 主要變動 推移

현행 우리나라의 電氣料金制度는 電氣의 사용
용도에 따라 料金種別을 달리 적용하는 用途別
요금제도로서 요금종별은 住宅用, 業務用, 產業
用, 農事用 및 街路燈用으로 구분하고 있다. 용
도별로 주요 料金構造 变動推移를 要約하면 다
음과 같다.

가. 住宅用 電氣料金構造 变動推移

住宅用 電氣料金 構造는 '73년의 1차 석유파
동 이전에는 사용량이 많으면 요금이 輕減되는
遞減料金制로 되어 있었으나 석유파동 이후 에
너지 소비절약을 목적으로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

금이 비싸지는 多段階 累進制를 채택하여 왔다. 그러나, 高率의 累進料金制로 인한 料金構造의 複雜化와 需用家間 料金負擔 不均衡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최근에는 점진적으로 누진단계가 축소되어 왔으며 '88年 3月 21日 改正된 현행 요금체계는 累進率 1 : 5.1의 4 단계로 되어 있다. 한편,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체계의 특징중의 하나로서 월 50kWh 이하를 사용하는 需用家에 대하여는 아주 낮은 料率을 적용함으로써 低所得層을 지원해 주는 이른바 라이프 라인(Life Line) 요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 業務用 電氣料金構造 變動推移

業務用 電氣料金構造는 商店등 소규모 수용으로부터 대형빌딩, 호텔등 대규모 수용에 이르기까지 多樣한 業務用 需用의 特성을 고려하여 사용시간(使用電力量 ÷ 契約電力)에 따라 累進段階를 구분하여 多段階 累進制를 적용해 왔으나, '88年 3月 21일의 料金改正時 누진구조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현행 업무용 전기요금체계는 수용가 그룹을 電壓別로 구분하여 高壓電力 수용가에게 저렴한 單一電力量 料金을 적용하는 電壓別 差等料金제를 도입하고 있다.

다. 產業用 電氣料金構造 變動推移

產業用 電力의 料金構造는 電壓과 容量差異에 따른 비용격차를 반영하여 小動力보다 大動力에 낮은 요금을 부과해 왔으며 부하조절을 통한 전력설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977年 12月부터 大動力인 產業用乙에 대해서는 最大負荷料金制(Peak Load Pricing)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1981년 이후부터 夏季冷房負荷의 증가로 年中 最大負荷가 주간에 발생하는 등 電力負荷形態가 변화됨에 따라 최대부하 요금제의 時間帶와 최대부하 發生時點間의 불일치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하요금 시간대와 실제부하 시간대의 불일치에 기인하는 負荷管理上의 效率性低下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 料金差等率

은 점차 축소 조정되고 있다.

3. 現行 電氣料金構造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가. 累進段階 및 累進率의 縮小調整

두차례의 石油波動을 겪으면서 전력사용의 抑制를 위해 住宅用 및 業務用에 실시된 累進料金制는 최근의 전기요금 조정시 累進構造가 많이 완화되어 왔으며 업무용에서의 누진구조는 완전히 廢止되었다. 누진요금제는 에너지절약 및 社會政策的 측면에서 다소 效果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費用構造로부터의 괴리가 초래하는 資源의 非效率的 配分, 料金制度의 複雜 및 需用家間 公平性原則위배 등 社會的費用을 또한 발생시키고 있다.

低所得層 보호를 위해 월 50kWh 까지 주택용 수용가에 대해 실시하는 라이프라인 요금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그 受惠對象需用家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厚生經濟의 인 측면에서 볼 때 저소득층 보호는 월 50kWh 소비에 해당하는 電力料金의 割引보다는 이에 해당하는 현금보상이 이론적으로는 우선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電力消費量에 대한 價格割引의 본래趣旨와 價格割引의 受惠效果間의 불일치가 클 경우에는 라이프라인 요금제도는 점차적으로 縮小調整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根本的인 對策으로서 供給費用 構造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현행의 累進構造가 비용구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분석될 경우에는 料率構造의 果敢한 改革이 필요할 것으로 料料된다.

나. 業務用 1, 2種 區分廢止

'88년 3월 21일의 業務用 電氣料金 改正內容은 사용시간별 累進構造의 완전 폐지와 電壓別 差等料金제의 導入으로 요약되는데, 이와 같은 料

金体系의 变動은 실제의 公급비용 구조에 접근하는 업무용 요금체계의 일대 개선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 동안 수차례 建議되어온 第1種과 第2種의 구분 폐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행 업무용 수용구분에서 제1종은 官公署、軍部隊、外交機關、報道機關、社會福祉機關、綜合病院 등 公共用에 적용하고 있으며, 제2종은 빌딩、市場、음식·숙박업등 제1종 이외의 업무용, 즉 一般業務用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업주체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이 구분되고 있으므로 適用對象의 區分基準이 명확하지 않다. 즉, 同一用途일지라도 政府가 직접 운영하면 제1종의 對象이 되고 民間人이 운영하면 요금이 비싼 제2종 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種間區分에는 經濟外의 인제 요소가 反映되고 있겠지만 적용기준이 애매하고 經濟的妥當性이 없는 현재의 제1종과 제2종의 구분은 磨止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특수수용가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租稅 및 補助金制度 등 사회적 비용이 적은 정책대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

다. 最大負荷 料金制度의 改善

앞에서 指摘하였듯이 最大負荷料金制의 時間帶과 最大負荷 發生時點間의 不一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그 동안 시간대별 料金差等率을 缩小시켜 왔으나, 이와 같은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最大負荷 料金制의 時間帶區分과 시간대별 料金差等率의 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時間帶別 負荷의 價格彈力性을 비롯하여 負荷行態에 관한 기초 자료에 의거하는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나, 負荷行態研究를 위한 分析技法 및 資料의 부족으로 전력부하의 실태를 고려하는 料金構造의 適正化는 당분간 불가능한 실정이다. 잠정적인 대책으로서 季節型 負荷時間帶區分을 적용, 夏季에는 계속적으로 주간에 最大負荷가 발생하며 그 負荷持續時間이 長期間 계속될 것

으로 예상되므로 重負荷와 最大負荷時間帶를 統合하여 輕負荷와 最大負荷時間帶만으로 區分하는 것이 負荷管理의 效率性 提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長期的으로 時間帶別 料金差等率의 適正化를 위한 研究가 수행되어야 하겠다.

라. 電力量料金과 基本料金 比重의 適正化

發電費用中 燃料費比重이 높은 石油火力 중심으로부터 燃料費比重이 낮은 原子力 및 石炭火力 중심 체제로의 電力供給構造上의 변화를 反映하는 基本料金과 電力量料金 比重間의 調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費用構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력량요금이 높을 경우 부하율이 높은 需用家가 부하율이 낮은 수용자를 補助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이로 인한 負荷率의 저하는 불필요한 施設投資 증대라는 資源分配上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基本料金 比重의 增大는 또한 景氣變動的 영향을 축소시키므로 電力販賣收入의 安定性 提高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4. 電氣事業의 與件變化와 電氣價格政策의 새로운 方向

高度化 情報社會, 技術革新의 進前, 생활의 便宜性 증대 요구에 따라 에너지 이용의 電力化率 上昇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와 같은 일상 생활 및 產業活動에서의 전기 에너지 비중 증대와 함께 良質의 電氣의 저렴한 공급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電力產業構造는 나라마다 複雜多樣하지만, 최근의 구미 電力事業動向을 살펴보면 發·送·配電 段階別 垂直分割論의 대두와 함께 정부의 적정·規制 역할에 관한 논의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의 완전독점형 전력산업구조에 内在하는 非效率性의 해소를 통한 비용절감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原子力, 有煙炭 中心 체제로의 공급구조변화, 原油價格 下落, 그

리고 원貨의 지속적인 評價切上 등도 또한 電氣事業의 環境을 크게 變化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電氣事業의 轉換期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에 適應하는 電氣料金 政策의 長期政策方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市場競爭型 電氣料金制度

規制의 緩和, 競爭의 導入, 热併合發電을 비롯한 제3자의 영향력 증대 등 전력사업의 轉換期에 부합하는 電氣價格制度는 현재의 需要抑制型 累進料率構造를 탈피하여 에너지源間 競合에 대비하는 市場競爭型 料金制度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이와 같은 경쟁여건하에 적합한 價格決定原則은 費用構造에 일치하는 限界費用 價格原則이다. 理論的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限界費用 價格의 實現가 어려운 점은 한계비용의 개념에 관한 여러 견해의 존재와 실제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電氣料金体系를 비용구조에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發電과 消費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電力需給의 特성을 반영하는 올바른 限界費用 概念의 정립과 한계비용 측정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段階別로 電氣料金構造를 費用構造에 일치시켜 가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책으로서 제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基準에서 볼 때, LNG내지 無煙炭의 供給過剩分 처분을 위한 電氣事業者의 消費調節者(Swing Consumer) 역할에 따른 비용의 증가를 電氣消費者가 부담하는 현 체제는 에너지源間의 相對價格構造를 왜곡시킴으로써 자원의 非效率的配分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자간의 公平性原則에도 위배된다. 總括에너지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에너지 산업의 支援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전기소비자 부담이 초래하는 社會的費用을 고려할 때 金融, 稅制上의 직접적인 지원이 우월한 정책으로 사료되므로, 향후에는 電氣事業者の 自律性 提高를 통해 政策的要因에 의한 費用負擔이 전기 가격에 반영되는 부분은 축소시켜 나갈 것이 요구된다.

마찬가지의 論理에 의해 热併合發電 및 自家發電設備의 剩餘電力 구입단가의 적용은 시간대별로 이와 같은 제3의 전력공급에 의해回避되는 電力生產費를 基準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原則적으로는 時間帶別 需要 및 供給構造, 剩餘豫備設備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燃料費節減뿐만 아니라 施設投資費 節減分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热併合發電 내지 自家發電의 경제성은 반드시 절감되는 전력공급비용과 해당 便益을 비교하여 판단되어야 하겠으며, 만약 이와 같은 열병합발전 내지 자가발전의 증대 현상이 非合理的인 料金制度에 기인하고 있다면 진정한 限界費用을 反映하는 市場競爭型 料金制度로의 과감한 요금제도 개혁을 통해 자원의 낭비적 配分을 防止하여야겠다.

나. 需要管理型 料率体系

경제적 저장이 용이하지 않은 전력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需要管理에 위한 負荷平準化가 가져오는 發電設備 必要量 節減의 중요성은 지금과 같이 過多設備 문제가 존재할 경우 자칫 과소평가 되기 쉬우나, 수요관리는 단순한 負荷節約 뿐만 아니라 심야부하 창출과 같은 부하이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負荷曲線形態의 改善을 위한 需要管理型 料率体系樹立이 갖는 重要性은 매우 크다.

(1) 最大負荷 料金制度의 擴大適用

最大負荷 料金制의 適用對象은 현재 產業用電力(乙) 수용가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產業用電力(甲) 수용가중 高壓電力 需用家, 業務用의 高壓電力 需用家, 나아가서는 住宅用 需用家 중 大需用家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最大負荷 料金制度의 段階別 확대 적용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현재 產業用電力(乙)需用家에 대해 적용중인 시간대별 사용 전력량에 대한 差等料金制는 燃料費에 대한 節約效果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設備費 節減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需用料金(基本料金)에 대해서

도 時間帶別 差等料金制를 鋤行하여 확대 운영
함이 바람직하다.

(2) 全電化 需用家를 위한 別途의 電氣料金 適用

技術的인 측면에서 電氣利用器機의 效率改善推移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蓄熱式電氣暖房機, 新型 히트펌프 등의 개발 및 보급에 의한 새로운 電力販賣市場의 잠재력은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住宅用 및 業務用 需用家를 대상으로 시설의 모든 에너지 공급을 전력으로 선택하는 수용가의 合理的인 소비유도를 위해서 별도로 全電化(all-electric) 需用家 料金制度의導入이 추천된다. 이와같은 料金制度의 실시는 負荷率 향상 및 費用節減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競合 시대에 대비하는 마케팅형 요금제도로서도 의의가 크다.

(3) 消費者 選擇料金制의 導入

費用構造를 충실히 反映하기 위하여는 料金構造가 複雜하게 되나, 需用家의 편의와 집행상의 效率性 提高를 위해서는 단순명료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두 가지 상충된 要求를 조화시키면서需用家의 多樣한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選擇型 料率制度의導入이 추천된다. 구체적인例로서 2種(季節別 또는 時間帶別)의 選擇型 最大負荷 料金制를導入하여需用家로 하여금 자신의 負荷形態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信賴度水準에 따른 差等料金制를 실시하여需用家들이 필요로 하는 供給信賴度에 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發電設備 必要量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 電氣料金水準의 適正化方案

'88년 3월 21일 우리나라의 電氣料金은 物價安定등을 목표로 원貨切上 및 油價下落으로 발생된 여유분을反映하여 平均 3.6% 引下되었다(편집자주: 그후 11월 평균 4.1% 再引下된바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電氣料金水準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發表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電氣料金水準은 競爭對象國인 台灣과는 비슷한 수준이나 일본, 싱가포르보다는 저렴한 수준이다. 그런데, 電氣料金水準의 國際的인 비교는 換率의 변동이나 料金制度上의 차이를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곤란하다. 전기는 非交易財이므로 換率變動에 의한 外貨表示價格의 변화는 국가간 전기요금수준 비교를 왜곡시키게 되므로 外貨表示電氣價格 대신 1kWh를 購入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勞動의 量 또는 1時間當 賃金에 해당하는 kWh量을 사용할 경우 더욱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

또한 消費部門別 平均販賣單價는 요금수준 뿐만 아니라 요금구조상의 差異를 함께 反映하고 있으므로 순수한 요금수준만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需用家의 특성을 kWh 대지 kW 사용수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表示할 때의 각국별 電氣料金 体系에 따라 계산된 전기요금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정확하다. 한편, 平均販賣 單價의 國際比較에 따른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一定量의 電力消費가 각국 소비자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담의 정도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이와같이 電力費 부담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동일한 전력소비량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력소비자가 부담하는 전력비 지출비중은 일본이나 대만의 소비자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國民所得이 이들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成長하고 있는데다가 電氣價格推移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일본 및 대만간의 電力費負擔 격차는 계속해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나라의 1人當 電力消費水準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이유는 높은 전기요금 수준에 起因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理論적으로 볼 때 電氣價格은 電力生產의 社會的機會費用을 반영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지출 결정에 올바른 신호를 제공하여야 하며,同時に

— FA 特別 세미나 開催 —

工場設備 自動化

그간 產業設備 自動制御 세미나를 每年 개최하여 많은 成果를 거둔바 있는 當協會에서는 國內 技術產業의 高度成長에 따른 生產性 提高는 물론 電氣界 尖端技術分野 發展에도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FA特別 세미나를 개최키로 하였으니 많은 參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主 催 : 大韓電氣協會
2. 期 間 : 1989. 5. 29(月) ~ 6. 2(金)
3. 講義題目 : 工場設備 自動化
4. 講 師 : 西獨 ASEA Brown Boveri 金昌德 首席研究員外
5. 수 강 료 : 70,000원 (教材代包含)

資本을 包含하여 電力化産에 투입된 모든 生產要素들에게 적정한 報酬를 지불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현행 전기요금 수준의 결정과 관련하여 適正化方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여러 政策的 要因에 의한 電氣價格水準의 歪曲要因(引上要因)은 電氣事業者の 自律性 提高를 통해 차츰 해소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의 自然獨占의 전력산업구조의 타당성에 관해 效率性과 衡平性의 기준에 의해 검토해야 할 것이 요구되며, 獨占企業에 内在하는 X의 非效率性(X-Inefficiency) 해소를 위한 制度經濟學的 관점에서의 最適規制制度研究가 필요하다.

셋째, 適正電氣價格의 결정은 適正投資計劃과 연계되어서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適正投資報酬率의 운영을 살펴 보면, 電氣價

格水準은 必要收入額(required revenue)을 확보하기 위한 企業財政的인 要求와 社會, 經濟政策의 要因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他產業의 投資報酬率과 비교하여 전력산업에서의 투자보수율이 실제로 제한되지保障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投資報酬率에 의한 전력산업의 규제보다는 租稅 및 補助金政策 등을 사용하여 電氣價格構造를 限界費用構造에 접근시켜 나가며, 技術開發投資를 유도하여 전력산업의 生產性向上을 도모함으로써, 현 제도 하에서의 非效率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규제정책으로의 轉換이 바람직하다.

넷째, 不適切하게 지출된 諸費用의 불인정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經營의 不實(mismanagement)에 기인하는 費用增大部分이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傳嫁되지 않도록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으로 미래의 소비에 대비하여 현재 지출되는 設備投資費의 부담에 관해서도 異時點間 (intertemporal) 適正配分 原則이 필요하다. 適正割引率의 사용을 포함하는 資本市場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현재의 限界電力消費者는 해당 限界供給費用만을 부담하도록 가격수준이 결정되어야 하겠다.

이상의 諸要素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電氣料金水準은 아직도 引下시킬 수 있는 요인인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여기에서 주의하여 受容해야 할 論理는 輸出競爭力 제고를 위해 產業用 電氣料金을 인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貨切上, 貨金引上, 保護貿易主義의 강화 등 각박한 무역환경에 직면한 產業界로서는 비용절감이 시급하며 전기요금이 예외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단순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電力產業의 費用構造를 고려하지 않고 產業用 電氣料金을 인하시킬 경우 比較優位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長期的으로는 에너지 與件變化에 취약적인 산업구조를 조성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는 근본적으로 전력산업의 体质改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經營合理化 및 生產性向上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料金政策面에서도 負荷率이 높은 電力多消費業體에게 유리한 料率構造를 제공하거나, 전력다소비업체의 負荷率을 향상시키는 負荷管理型 料率構造를 적용함으로써 가격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產業構造를 에너지 與件變化에 강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電氣價格調整審議機構의 設置

현재의 電氣料金 改正節次를 보면 電力會社의 料金改正 申請案을 법률상의 절차를 따라 政府가 승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料金決定 過程에 一般消費者, 學界, 業界의 견해가 직접 반영될 기회가 없다.

適正投資報酬率의 決定, 經營不實에 기인하는

料金引上 要因發生時의 책임소재 규명 등을 위해선 전기가격 결정과정에 여러 利害當事者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電氣價格調整 審議機構와 같은 制度的 裝置를 設置하여 운영하는 것이 規制의 效率性 提高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5. 要約

우리나라의 電氣料金制度는 각종 政策의要因을 반영하면서 형성되어 왔으므로 근본적인 가격결정원칙이 결여되고 있으며 價格決定의 一般原則에 비추어 볼 때 여러 문제점들이 露呈되고 있다. 本稿에서는 현행 電氣料金構造의 改善方案으로서 住宅用 電氣料金의 累進構造 緩和, 業務用 電氣料金의 1, 2種 區分廢止, 產業用 最大負荷料金의 時間帶 區分變更 및 요금차등률의 적정화, 그리고 基本料金 比重의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電氣事業의 새로운 與件變化에 부합하는 長期的인 電氣料金 政策方向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競合時代에 對應하는 市場競爭型 電氣價格 決定原則으로서 限界費用 價格原則의 채택이 필요하다.

둘째, 需要管理型 電氣價格 政策方案으로서 最大負荷 料金制度의 擴大適用, 消費者 選擇型 料金制度의 實施, 그리고 全電化 需用家 料金制度의 導入에 관한 政策檢討가 요망된다.

셋째, 電氣料金水準適正化를 위해서는 政策의要因에 의한 電氣價格 歪曲要因 排除, 獨占企業으로서의 電氣事業者の 非效率性 해소, 投資報酬率 規制에 대신하는 電氣事業者の 合理化 인센티브 規制, 經營不實에 起因하는 費用增大部分의 不認定, 異時點間設備投資費의 適正配分등을 통하여 電氣料金水準引下를 모색하여야겠다.

그으로 電氣料金 改正時 利害當事者들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反映시킬 수 있도록 電氣價格調整 審議機構와 같은 制度的 裝置의 設置가 요망된다.